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 · 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「군사법원법」(법률 제17367호, 2020. 6. 9. 공포, 2020. 12. 10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·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시 피해자,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(안 제7조제 3항 신설)
- O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시 신청인 등의 준수사항에 관하여

정함(안 제7조제4항제5호 신설, 같은 조 제5항)

- 4.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
- 5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 · 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 · 복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"비실명 처리"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개인정보"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.
-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재판장은 피해자,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서기에게 「군사법원법」 제64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서기는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.
- 제7조제4항(종전의 제3항)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7조제5

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하며, 제7조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5.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3조(다른 규칙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"비실명 처리"란 재판기록에
	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
	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
	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
	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
	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
	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
	<u>말한다.</u>
<u><신 설></u>	4. "개인정보"란 「개인정보 보
	호법」 제2조제1호의 개인정
	보를 말한다.
제7조(열람·복사의 절차 등) ①	제7조(열람・복사의 절차 등) ①
• 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재판장은 피해자, 증인 등 사
	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
	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
	는 경우 서기에게 「군사법원
	법」 제64조제3항에 따른 개인
	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.
	이 경우에 서기는 재판기록에

③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 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 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(이하 "신청 인 등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<신 설>

④ 서기는 신청인 등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,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· 복 사의 중지, 제한, 그 밖의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⑤ <u>제4항</u>의 조치에 관한 이의신 청에 대하여는 그 서기가 속한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.

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
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
<u>여야 한다.</u>
<u>4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
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
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
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
득하지 말 것
<u>⑤</u> <u>제4항</u>
<u>⑥</u> 제5항
,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	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358